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2023. 6. 19.

運 營 委 員 會
專門委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35호로 2023년 5월 4일 김지연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기준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
- 나. 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 신설(안 제3조)
- 다. 징계 기준 및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안 별표1, 안 별표2)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생략.

5. 검토의견

○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을 의결 시 대상자의 비위 유형, 과실의 경중,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등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 **안 제3조(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별표5〕에 따른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 적용 시 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안〔별표1〕(징계기준)**에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1〕의 ‘징계기준’에 근거하여 11가지의 비위의 유형에 대해 이를 항목별로 세분화하고 비위의 정도에 차등을 두어 징계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안〔별표2〕(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서는 현 조례의〔별표〕‘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1〕~〔별표3〕에 근거하여 ‘음주운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청렴의무’와 관련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현 조례에서는 “견책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에 대해 “감봉 이상”의 징계로 변경하여 징계의 수위를 높임.

○ 검토 결과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및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5]에서 “정책결정 사항”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최고감독자(결재권자에 해당함)에 대해 1순위로 문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 대상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회의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21. 10. 8.>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 ⑤ 처분권자는 제4항에 따른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본조신설 2010. 3. 22.]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

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2의2의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 사건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8. 7. 30., 2020. 7. 28., 2020. 12. 31., 2021. 8. 27.>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 8. 31.>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

제9조(위임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